

문서번호 : 10-04-사무-013  
수 신 : 언론사 및 사회단체  
발 신 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(담당: 송상교 변호사 / T. 02-522-7284)  
제 목 : [보도자료]기무사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기  
전송일자 : 2010. 4. 22.(목)  
전송매수 : 총 3 매

## [보도자료]

### 기무사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기
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이하 “민변”이라 함)은 지난 2009년 8월 확인된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 등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, 사찰의 대상이 된 민주노동당원 및 인터넷 카페 ‘뜨겁습니다’ 회원 15인(이하 “원고들”이라 함)을 대리하여 4. 22.(목)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.

이번 소송은 ①원고들의 일상 생활을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캠코더를 통해 촬영한 행위 ②원고들을 미행하며 그들의 활동 내역을 일일이 수첩에 기재하고 사찰한 행위 등에 대하여, 군 수사기관의 직무범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데 따른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.

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기무사와 군은 오늘에 이르도록 자신들의 위법한 민간인 사찰행위를 일체 부인하고 있습니다. 원고들과 민변은 법정에서 그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.

소장 내용 요약본을 첨부합니다.

※ 첨부: 소장 요약본

2010년 4월 22일
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

회장 백 승 헌



## [소장 요약]

### 1. 원고들에 대한 사찰 및 캠코더를 통한 영상녹화 및 촬영

- 원고들의 일상 생활과 적법한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 등에 대하여 기무사 소속원들이 지속적, 조직적으로 사찰을 행한 사실이 영상 녹화자료 입수를 통해 드러남
- 녹화된 장면들은 군 및 군인과 관련된 일이 아니며, 기무사의 동향파악 감시 등 사찰행위가 군사보안, 군방첩 및 군수사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, 정당인, 가정주부 및 일반 동호인 등을 그 대상으로 하였고,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하지 아니한 채 미행, 망원, 촬영 활동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, 기무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감시 등 사찰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에 관련한 첩보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임

### 2. 수첩에 사찰 결과로 파악한 원고들의 동태를 기록

- 기무사 소속 신모 대위의 수첩에는 원고들이 일자, 시간 별로 이동한 내용과 장소 등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음.
- 기무사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그 동향감시의 목적 하에 미행,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개인에 대한 사적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여 왔고,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원고들에 대한 추가 사찰을 계속하여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넘는 것임이 분명함.
- 뿐만 아니라,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 내지 감독, 수집 및 이용목적의 명시와 그에 따른 입력제한, 정보의 수집방법과 보유에 관한 적정성의 유지, 개인정보체계의 공시, 정보의 부당한 유출 방지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채 위에 거시한 사찰행위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, 따라

서 원고들은 이러한 기무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 및 관리로 인하여 자기 정보 관리·통제권을 침해당하고, 나아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임

### 3. 국가의 책임 및 손해배상의 범위

- 따라서, 기무사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의 위와 같은 위법한 사찰행위는 원고들의 인격권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,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고,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유로운 의사발현과 행동구현에 대하여 상당한 정신적 타격을 입었다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찰 등의 피해의식에서 헤어나기 쉽지 아니할 것임
- 이 사건 사생활 침해의 성격, 방법 및 그 정도, 정보수집의 수단 및 기간, 원고들의 신분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, 정보수집의 기간, 이 사건 사찰 등 행위로 침해된 기본권의 본질은 인격권적인 것으로 군수사기관의 부당한 감시로부터의 자유인 점 등을 감안하여, 그 위자료로 원고들 각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각 금 2,000만원을 청구하는 것임.

#### ※ 참고사항

- 원고들은 2009. 9. 2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 8400호 증거보전 결정을 받은 바 있음. 위 결정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를 거친 증거들을 제출함.

담당변호사: 변호사 이원구  
법무법인 한결(변호사 박주민)  
법무법인 나래(변호사 이재정)